

장애인복지 관련3법 발의와 경기도의 시사점

목차

- I.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와 법 발의 배경
- II. 장애인복지 3법과 기존 관련법 비교
- III. 정책 제언

장애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한 3법 발의

- ▶ 최보윤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
 - 20대 국회부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법제정 운동과 발의가 있었으나 논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2대 국회까지 옴
- ▶ 장애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서 사회적 장애로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장애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와 환경이 장애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원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 확산
 -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장애인 관련 법률을 기본법과 총괄 서비스법과 자립지원서비스법으로 구분

- ▶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총괄서비스법)'과 '장애인 권리보장법률안(기본법)'을 나누고 자립지원 체계구축을 위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자립지원서비스법)' 제정
- ▶ 「경기도장애인복지기본조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에 대한 개정 필요
 - 관련 조례에 '장애'에 대한 정의 추가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핵심기관으로서의 '광역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조문 추가

정책 제언

- ▶ 직접 관련 조례 외 장애를 언급하고 있는 조례에 포괄적인 장애개념 추가
- ▶ 「경기도장애인복지기본조례」에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조문 추가



장애의 사회적 책임과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복지관련 3법
발의

장애인의 욕구와 권리에 기반한 장애인복지 관련3법 발의

- ▶ 최보윤 의원이 새로운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20대 국회부터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법제정 운동과 발의가 있었으나 논의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2대 국회까지 옴
-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2007년 비준한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제적 수준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함
 -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 시책, 장애인 복지 지원 및 서비스 등 장애인 정책 관련 전반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 이념과 방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¹⁾
 - 협약 등에서는 장애인의 문제를 권리 중심으로 접근하는 국제적 조류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내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한 상황임
- ▶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법률체계 부족으로 통합지원이 어려움
 - UN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모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한 선택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있음”²⁾
 - 또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³⁾

장애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서 사회적 장애로 확대(장애의 대한 포괄적 접근)

- ▶ 80년대 WHO에 의해 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가 이루어졌으나 장애를 의학적 관점에서 바라봄
 -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이해하고 장애인을 치료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사회에서의 배제와 차별을 초래하는 데 기여함
- ▶ 20세기 중반부터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이 등장, 장애를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사회와 환경이 장애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원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식 확산
 - 장애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 불평등에서 비롯된 결과로 여기고 장애의 포괄적 접근이 강조되며, 장애인 권리와 인권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됨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kofdo.kr)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견
2)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9조
3)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I. 장애인복지 환경변화와 법 발의 배경

수요자 중심·지역사회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UNCRPD)과 같은 국제적 조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로 인해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이 더욱 포괄적이고 접근 가능하도록 발전하고 있음
- 결론적으로, 장애에 대한 개념은 의학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그리고 인권 중심의 접근으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의료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비교⁴⁾

구분	의료적 모델	사회적 모델
문제의 소재	개인적 문제(손상)	사회적 문제(차별)
해결책	개별적 치료	사회적 행동
기본적 시각	분리·보호	통합·권리
해결방안	개별적인 적용	사회변화
서비스 주체	전문적 권위자	집합적 사회
장애인의 역할	통제 대상	선택 주체
권리구제 방법	행정규제	개별소송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시설에서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강화

- ▶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 종합판정조사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2019년 7월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자격) → 2020년 이동지원(장애인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 2022년 소득, 고용지원(장애인연금, 장애인의무고용)]⁵⁾
- ▶ 제5차 및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 구축을 위해 아파트형 등 일반주택에 체험홈 및 자립지원 주택 등을 설치를 통해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거주서비스의 다양화
 - 중증장애인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
- ▶ 시설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
 - 장애인이 자신의 주거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고 집과 같은 환경에서 지역사회와 더불어 자립해서 살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의 거주지 이전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시설의 변화 추진⁶⁾
 - 2022년~2024년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지원하고 자기결정권 보장, 삶의 질과 인권 제고, 더 나아가 개인의 자립을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시설 기능전환, 공동체 강화 등을 통한 지역사회 지지기반 구축⁷⁾

4) 김영애 외(2019). 장애인복지론. KNOU Press.

5) 이병화 외(2020). 경기도장애인복지계획 수립연구. 경기복지재단.

6) 이병화 외(2022). 경기도 시설장애인의 자립과정 경험 연구. 경기복지재단.

7) 이병화 외(2022). 경기도 장애인 자립육구 실태조사. 경기복지재단.

II. 장애인복지3법과 기존 관련법 비교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존 관련법과 장애인복지 관련 3법 비교 분석

- ▶ 최보윤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장애인복지 3법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함
 - 대표 발의된 3법은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며, 이를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비교 분석을 통해 발의된 법률안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경기도 관련 조례의 재개정 방향과 시사점으로 도출하고자 함

〈표 2〉 장애인복지 관련3법과 기존 관련법(장애인복지법)과의 주요 쟁점 사항

구분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주요 쟁점 사항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성 떨어지고, 장애의 권리의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 부족과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지원 명시하였으나 관련 법적 근거 미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에 초점을 둠

-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 정책과 방향을 규정하는 기본적 성격으로 모든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성 떨어지고, 장애를 권리 차원으로 접근하는 국제적 경향을 반영하지 못함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총 9장 90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 총칙, 제2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3장 복지 조치,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음⁸⁾
- ▶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⁹⁾
 -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총 7장 92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복지 지원, 제3장 장애인서비스 제공 절차, 제4장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제5장 장애인서비스 전문인력,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8) 현행 장애인복지법 구성 내용

9)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인 당사자주의 권리 중심' 장애정책 패러다임 개편 '장애인 3법' 발의

II. 장애인복지 3법과 기존 관련법 비교

장애인의 권리가반 서비스 체계 마련과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확보

- 가.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이바지 하는 데 목적을 둠(안 제1조).
- 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사항을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및 재활, 기회균등 및 사회참여,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43조까지).
- 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해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지원기관 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40조 및 제41조).
- 라. 장애인서비스는 장애인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특정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함(안 44조).
- 마. 사례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상담 및 조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
- 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하고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명칭을 사용함(안 제57조).
- 사. 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 등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평가 실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58조).
- 아. 종전 법률의 장애인 학대 금지 및 권리구제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3612호)으로 이관함.

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차이

- ▶ 두 법률의 가장 큰 차이는 법제정 목적에 있으며, 발의 법률안이 장애인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것임
 - 첫째,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과 이에 따른 사업 제공을 주로 명시하고 있으나, 발의 법률안은 이에 더불어 서비스 제공에 있어 그 근거를 장애인의 의사 존중과 생애주기 욕구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둘째, 기존 법률에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제공 절차와 과정, 제공기관이 다소 혼재되어 있었으나, 발의 법률안은 이를 각 장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음. 또한, 타 법률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제공기관도 함께 제시함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 그 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셋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 및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넷째, 기존 법률에서는 실태조사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시행을 명시하고 있으나, 발의 법률안에서는 삭제되었고 자립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삭제된 실태조사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에 추가됨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반한 서비스체계 마련과 그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을 확보함

- ▶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은 장애인 문제를 권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국제적 흐름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장애인 관련 법률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대체하는 위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님
 - 발의된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은 총 6장 87조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 총칙, 제2장 장애인의 권리, 제3장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추진체계, 제4장 장애인 권리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II. 장애인복지 3법과 기존 관련법 비교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1.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장애 특성에 따른 지원을 통하여 자립적인 삶을 영위하고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
2. '장애'의 정의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반영하여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하여 이른바 사회적 장애 개념을 도입하고, '장애포괄적 접근'의 정의를 새롭게 도입함(안 제3조).
3.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8조).
4.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이념을 반영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자립생활 보장, 접근성, 참여, 건강, 교육, 직업, 소득보장 등 장애인 정책에 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5.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주요정책을 수립, 심의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둠(안 제45조).
6.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안 제53조).
7. 장애인의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부터 제75조까지).
8.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권한위임 등에 관한 보칙 규정을 둠(안 제77조부터 제79조까지).

▶ 두 법률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5장(복지시설과 단체) 제59조 이하의 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첫째,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개인적 차원에서 중첩하였다면, 발의 법률안은 장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있음. 즉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라고 규정함
- 둘째, 발의 법률안에는 장애영향평가제도를 신설하여 법령, 예산 및 기금 사업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장애인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음
- 셋째, 장애인권리보장원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지원을 위한 기능을 강화함

「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및주거전환지원에관한법률안」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마련임

- ▶ 발의된 「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및주거전환지원에관한법률안」은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마련을 명시하였으나 관련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나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독립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¹⁰⁾
 - 발의된 「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및주거전환지원에관한법률안」은 별도의 장없이 35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0)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2202591]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및주거전환지원에관한법률안.

II. 장애인복지 3법과 기존 관련법 비교

장애인 관련 법률을 기본법과 총괄 서비스법 및 서비스법으로 구분

1.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3.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안 제14조 및 제15조).
5.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신청을 받거나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자립조사 또는 자립육구조사를 의뢰하고, 그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건강권 보장 지원, 재활 및 발달 지원 연계, 장애인주택·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함(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6. 시장등은 관할지역 장애인에 대하여 단기 체험 서비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함(안 제23조 및 제24조).
7.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0조).

- ▶ 두 법률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4장(자립생활의 지원)의 조문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구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첫째, 발의된 법률안에는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둘째,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을 지원할 전달체계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발의 법률안은 이 역할을 수행할 기관으로써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복지 3법 발의의 의미와 시사점(기존 관련법의 한계 극복)

- ▶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¹¹⁾로 개편
- ▶ 또한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는 「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및주거전환지원에관한법률안」을 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¹²⁾

1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kofdo.kr)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12)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2202591]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및주거전환지원에관한법률안.

II. 장애인복지 3법과 기존 관련법 비교

〈표 3〉 장애인복지 관련3법 주요 내용 비교

구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제정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 지원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 · 생애주기별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향유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 ·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5장 권리구제 관련 조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립과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실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법적 근거 · 기존 장애인복지법 제4장(자립생활의 지원)의 조문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과 욕구에 따른 지원 체계화 · 장애인에 대한 복지 지원 내용을 구분(생활유지 및 보장, 근로, 건강 등) · 정기적인 자립지원 조사,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수립 등 지원기관 운영 근거 마련 · 서비스는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 상담 및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개별지원계획 수립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장애인 시설의 기능을 개편과 이에 따른 장애인서비스제공기관 명칭 사용과 품질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의 정의 "사회의 문화적·물리적 및 제도적 장벽 등의 환경적 요인과 신체적·정신적 특성 등의 개인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사회적 장애 개념 도입 ·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 제도 도입 ·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장애인 정책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 정책수립, 심의하고 부처의견 조정이행·감독평가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 설치 · 한국장애인개발원을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 명칭 변경 · 장애인의 학대 및 권리침해 행위 금지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규정 · 장애인단체의 보호·육성, 권한위임 등에 관한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 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 · 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 ·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을 위하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애 자립조사 또는 자립육구조사를 의뢰조사, 자립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인별 지원계획과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정착지원금 지원 등을 비롯 주거전환 관련 정보제공, 자립 준비 등 지원 · 광역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장애인에 대한 상황을 평가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양성 교육
의미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누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제반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갖도록 하고, 「장애인복지법」은 체계적이고 촘촘한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과 그에 필요한 사항을 총괄하는 법률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II. 장애인복지 3법과 기존 관련법 비교

「경기도장애인복지기본조례」, 「경기도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개정

장애인복지 3법 발의에 따른 경기도 유사 조례와 시사점

- ▶ 발의된 장애인복지 3법과 관련된 경기도 유사 조례로서 「경기도장애인복지기본조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경기도장애인복지기본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정된 것으로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에 따라 장애의 정의 및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함
 - 둘째,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자립전환지원단을 광역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법률에 맞춰 개정하고 개별지원계획과 관련된 내용 추가 및 보완이 필요함
 - 셋째,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제정된 것으로 장애의 정의 추가 필요
 - 경기도의 경우, 기존 「장애인복지법」의 위임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을 시행 왔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발의된 법률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표 4〉 장애인복지 3법 발의와 경기도 유사 조례 비교

구분	경기도장애인복지기본조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는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제3조(용어의 정의)에 장애의 정의 추가 필요 · “조례 제12조(장애인의 날 행사 등)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등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제9조(장애인의 날)로 변경 · “제37조(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한다.”를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제4장(장애인서비스제공기관)의 내용으로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 제2조(정의)에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지원’의 정의 추가 · 제20조(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의 구성·운영)과 제21조(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의 기능)의 내용을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제15조(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내용으로 수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조례 제2조(정의) 1. ‘장애’의 정의를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제2조(정의)에서 ‘장애’의 정의로 수정 보완 · 본 조례에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제8조의 장애영향평가제도 관련 내용 추가 · 본 조례 제12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운영)의 내용을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제59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의 내용으로 수정 보완 · 본 조례 제12조2(피해장애인 쉼터 등의 설치·운영)의 내용을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제63조(피해장애인 쉼터)의 내용으로 수정 보완

관련 조례에 '장애'에 대한 정의 및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추가 필요

직접 관련된 조례¹³⁾ 외에도 장애를 언급하고 있는 조례에 포괄적인 장애 개념 추가 및 장애영향평가 제도 관련 조문 추가 필요

- ▶ 장애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개인과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장애가 발생한다고 인식 확산
 -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의 확산으로 인해 장애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 불평등에서 비롯된 결과로 여기고 장애의 포괄적 접근이 강조되고 있으며, 장애인 권리와 인권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 또한, 현재 예산의 한계로 장애인 유형 확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지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현재 보건건강국에서 “경기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련 조례”에 따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위해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함
- ▶ 「장애인권리보장법률안」제8조(장애영향평가 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차별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정책 또는 예산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경기도장애인복지기본조례」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장애인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20조에 명시된 ‘장애인자립전환지원단’을 ‘광역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 조문 개정 필요

- ▶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명시된 광역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과 주거유지서비스를 관할하는 핵심기관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함
 - 현재 경기도 장애인자립전환지원단의 역할을 누리센터의 자립지원팀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등 관련 지원체계 부족으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법률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립 및 자립육구조사,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기반 조성, 자립 및 주거 전환 준비·전환·정착 과정 지원,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 및 이행 지원,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및 정착 상황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상황 평가,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자립 관련 상담·교육, 복지지원 정보 제공, 관련 기관 간 연계, 시·도지사가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¹⁴⁾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13) 「경기도장애인복지기본조례」,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경기도장애인인권증진에관한조례」

14) 의안정보시스템(<https://likms.assembly.go.kr>). [2202591]장애인의지역사회자립및주거전환지원에관한법률안.